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56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이강일·허성무·이용선

안호영 · 이학영 · 전재수

윤건영 • 권칠승 • 황 희

민병덕 · 김종민 · 강득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함. 허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지 아니함.

타 상호금융기관의 법례를 살펴보면, 농협·수협은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21년도에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 역시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운영의 절차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음. 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 이를 고려하여 본 개정안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되며, 단기인 재임 기간도 연임 횟수에 포함됨. 이는 조합이 보궐선거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의2제2항, 제27 조제1항 및 제3항).
- 나.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임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10 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71조의 2제7항).

다. 임기 2년 이내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의 경우에 해당 임기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법률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8항).

법률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을 "이사장은"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은 "이사장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의"를 "이사장의"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을 "이사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이사장, 정관에서"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 법"을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 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 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제7항 중 "제28조"를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한다.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8항 중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
- 2. 2023년 11월 21일 이전 임기 2년 미만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 장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2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의 사항: <u>이사장과</u>	2 <u>이사장은</u>
<u>부이사장은</u> 선거인(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	
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	
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u>이사</u>	, <u>이</u> 사
<u>장 및 부이사장을</u> 제외한 임원	<u>장을</u>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	
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	
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	
용한다.	.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제27조(임원) ①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u>함하여</u>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	
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u>이</u>	③

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 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④ (생략)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부이사장, 정관에서</u> 정하는 이 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
- ⑥ ~ ⑬ (생 략)
-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1. · 2. (생략)
 - 3. <u>형</u>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생략)
 - 5. <u>이 법</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이사장의
, <u>o</u>]
사장을
④ (현행과 같음)
⑤
<u>정관에서</u>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1. • 2. (현행과 같음)
3. <u>금고 이상의 형</u>
4. (현행과 같음)
5. <u>이 법(제27</u> 조의2는 제외한

다)-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u><신 설></u>

6. ~ 12. (생 략) ②·③ (생 략) <u><신 설></u>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 1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 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 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 하여야 한다.

-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 요건) ① ~ ⑥ (생 략)
- ⑦ 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 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 ⑦ (생 략)
 - 8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 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31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9)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
요건) ① ~ ⑥	(현행3	라 같	날음)
⑦ 제28조 및	제28조.	<u> 12</u> -	
법률 제19565호	신용협	동조	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 1.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 는 경우
- 2. 2023년 11월 21일 이전 임기 2년 미만의 이사장을 선출하 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⑨ (생 략)